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50 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희승・복기왕

강유정・박 정・정준호

조인철 · 장철민 · 손명수

추미애 • 박홍근 • 김영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,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다만 필요한 기간의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령은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 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.

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,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.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 특권이 있음.

이에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, 「형법」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 및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리,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(行政各部)의 장 등에 대하여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직대통령에 대한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직대 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3(외교관여권의 발급대	제4조의3(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
상자)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	자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	
수 있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「전직대통령</u>
	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
	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
	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
	통령 및 「헌법재판소법」에
	따른 탄핵결정을 받은 국무총
	리,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(行政
	各部)의 장 등에 대하여는 관
	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
	상자에서 제외한다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